

울산지방법원 2024. 4. 19 선고 2022가단733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## 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운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상우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4. 5.

판 결 선 고 2024. 4. 19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4. 3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 및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, 원고가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2021. 2. 27. 및 같은 해 3. 11.경 위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합계 1,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, 피고가 위 접근매체 양도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.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,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입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4. 3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임미경